



제302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 4 차 복 지 환 경 위 원 회

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
[박윤옥 의원 대표발의]

## 검 토 보 고 서

2024. 4. 22.

**복지환경위원회**

전문위원 서용관

#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박윤옥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4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환경계획 등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한 “환경정책위원회”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목적, 기본이념 및 정의(안 제1조~제3조)
- 시의 책무, 사업자의 책무, 시민의 권리 및 책무(안 제4조~제6조)
- 환경계획의 수립 등, 자원의 순환적 사용 촉진 추진 등(안 제7조, 제8조)
- 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등 및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(안 제9조, 제10조)
- 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 등,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(안 제11조, 제12조)
-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 등(안 제13조, 제14조)
-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, 제척·회피·기피(안 제15조, 제16조)
- 위원장의 직무, 협조 요청, 수당 등(안 제17조~제19조)
-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, 협력 등(안 제20조, 제21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

다. 관련부서 : 환경정책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4. 5. ~ 4.10.(6일간) /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상위법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들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임.
- 주요개정 내용은 환경보존(기본)계획의 명칭을 법령에 따라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시·도의 환경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
- 효율적인 환경계획 등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한 “환경정책위원회”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의제 21의 추진 조항을 삭제하였음
- 본 조례는 남양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 및 책무와 시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입법체계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

☑ 「환경정책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”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.
2. “자연환경”이란 지하·지표(해양을 포함한다)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(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3. “생활환경”이란 대기, 물, 토양, 폐기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(日照), 인공조명,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.
4. “환경오염”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해양오염, 방사능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 방해,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
5. “환경훼손”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(濫獲) 및 그 서식지의 파괴, 생태계 질서의 교란, 자연경관의 훼손, 표토(表土)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.
6. “환경보전”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·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
7. “환경용량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,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.
8. “환경기준”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.

제19조(시·군·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

가환경종합계획 및 시·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·군·구의 환경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 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삭제 <2021. 1. 5.>

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·군의 환경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, 대기,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⑥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#### 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## 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14조(위원회의 구성 등)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따른 수당 지급
  - 제1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  
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  
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 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부분은 위원회 구성과 수당 조항의 신설이 되겠으며,  
비용의 발생은 위원회 참석수당 등 정도로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정

### 4. 작성자

환경정책과장 이경선